

#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74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2025. 12. 31.字) 에 따라, 강남구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가족·다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가족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가족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강남구 가족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가족센터 서비스 총괄 사업(가족사업안내(지침)) 등

○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강남구 가족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	지하1층 ~ 지상4층 (2,693.66㎡)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등

○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1. 1. ~ 2030. 12. 31.)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금액(원)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	기본급	858,803,240	44.7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2025년 가족센터 사업 안내	
		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96,579,000		5.0
			가족수당	18,600,000		1.0
			정액급식비	34,320,000		1.8
			명절수당	84,406,960		4.4
			관리자수당	2,400,000		0.1
		보험료	퇴직적립금	95,496,700		5.0
			국민건강보험료	37,604,980		2.0
			국민연금보험료	50,493,300		2.6
			산재보험료	7,701,330		0.4
	고용보험료		14,320,650	0.7		
	장기요양보험	4,869,840	0.3			
	기타후생경비	27,960,000	1.5			
	<b>소 계</b>	<b>1,333,556,000</b>	<b>69.5</b>			
	② 운영비	기관운영비	4,500,000	0.2		- 2025년 가족센터 사업 안내
		여비(국내)	2,400,000	0.1		
		수용비 및 수수료	41,734,000	2.2		
공공요금		24,180,000	1.3			
체세공과금		4,148,000	0.2			
차량비		500,000	0.0			
<b>소 계</b>	<b>77,462,000</b>	<b>4.0</b>				
③ 시설비	자산취득비	1,000,000	0.1	- 2025년 가족센터 사업 안내		
	시설장비유지비	7,840,000	0.4			
	<b>소 계</b>	<b>8,840,000</b>	<b>0.5</b>			
④ 사업비	500,715,000	26.0	- 2025년 가족센터 사업 안내			
<b>지출원가 합계(A=①+②+③+④)</b>		<b>1,920,573,000</b>	<b>100</b>			
수입원가	⑤ 법인전입금	23,000,000	9.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3장 제13조(이용료 등)에 의거 실비차원의 프로그램 참가비 수입 발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⑥ 후원금	15,000,000	6.3			
	⑦ 프로그램 참가비	121,475,000	51.0			
	⑧ 사용료	78,638,570	33.0			
<b>수입원가 합계(B=⑤+⑥+⑦+⑧+⑨)</b>		<b>238,113,570</b>	<b>100</b>			
<b>위탁비용(A-B)</b>		<b>1,682,459,430</b>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심사 후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그 밖에 사업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5년 가족사업안내(지침)

2025년 가족센터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총괄

○ 가족사업

- 사업영역: 가족관계, 가족돌봄(온가족보듬),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다문화가족지원

- 사업영역: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교류 소통공간, 통번역, 결혼이민지역량강화 지원,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맞춤형직업훈련,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기초학습지원, 교육활동비지원, 진로설계지원, 이중언어교육지원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I.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강남구 가족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현재 운영 법인과의 위탁 기간은 2025. 12. 31.까지임.
-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 II. 주요 사항의 검토

- 강남구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합·운영하는 통합 센터임.

-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2014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통합센터 추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가족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통합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함. 또한 강남구는 2025. 3. 21.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센터로의 통합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 바 있음.

**[강남구 가족센터 통합 주요 추진 경과]**

- 2014년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여성가족부 지침 / 명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18. 02. 1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신청(강남구 → 서울시)
- 2022. 01. 01. 센터명칭 변경(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강남구가족센터)
- 2025. 03. 21. 조례 개정으로 가족센터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이에 금번 동의안에서는 기존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센터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강남구 가족센터 현황]**

<b>시 설 명</b>	강남구 가족센터		
<b>소 재 지</b>	강남구 개포로 617-8		
<b>시설규모</b>	층수: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693.66㎡(대지면적:1,087.7㎡)		
<b>준공일자</b>	1998. 12. 26.	<b>개관일자</b>	1998. 12. 1.
<b>이용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이용자 :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li> <li>- 참여인원 : 연 75,647건 (2024년 기준)</li> </ul>	<b>운영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인원 : 22명</li> <li>- 구성현황: 센터장(1명), 사무국장(1명), 팀장(3명), 팀원(17명)</li> </ul>
<b>사업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내 갈등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 의사소통 향상, 구성원 역량 강화 등</li> <li>-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 통합교육, 상담 등</li> </ul>		

예산내역	(2025. 7월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연도별 민간위탁금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7,946,868	1,738,259	1,612,108	1,704,639	1,816,030	1,075,832
	가족센터	5,085,004	1,102,876	1,034,567	1,087,481	1,119,225	740,855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861,864	635,383	577,541	617,158	696,805	334,977	

민간위탁 추진현황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위탁횟수: 총 9회 (1998. 12. 1. ~ 2025. 12. 31.)			
	시설명	설립일	위탁법인 (센터장)	위탁기간 (최초수탁)
	강남구 가족센터	1998.12.1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021. 1. 1.~2025. 12. 31 (1998. 12. 1.)
강남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0.2.1.	2022. 1. 1.~2025. 12. 31 (2010. 2. 1.)		

(자료: 가족정책과)

- 가족센터의 민간위탁은 관계 법령 및 조례, 여성가족부 지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강남구 가족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기타 가족센터 서비스 총괄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2026. 1. 1 ~ 2030. 12. 31.)으로 제출되었음.

[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		
<input type="checkbox"/> 위탁 근거법령 및 수탁자격		
	수탁자격	위탁근거 법령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li> <li>▪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li> <li>▪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li> <li>▪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li> <li>▪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li> </ul>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강남구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2025. 7. 10.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가족센터 86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3.5점).
- 참고로, 2025년 5월에 있었던 센터 운영 현지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2025년 강남구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지 조사 결과		
구분	세부 지적내용	조치 사항
가족 센터	- 24년 12월의 강사비 일부가 25년 1월에 세출 처리되었으며, 23년 12월의 강사비 일부가 24년 1월에 세출 처리되어 기간 귀속의 오류	주의
	- 키포트카드(커피) 지급 내역, 카카오페이 충전 후 사용 결과 미첨부 사례 확인	주의
	- 회계서류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가 아닌 삭선 후 담당자 도장 날인	주의
	- 재물조사표/비품대장의 경우 가족센터와 예산이 구분된 타 사업들과 함께 관리되어 구분란 기재 권고	권고
	- 직원·유관기관 축의부의금 지급 관련 내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비할 것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용	권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 행사간담회 등 추진 시 ‘강남구 주요경비 기준’ 을 초과한 급식비, 간식비 지출	주의

(자료: 가족정책과)

### III. 종합의견

- 강남구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센터를 운영해 왔음. 또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 기능 강화,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경제성,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료 됨.

- 다만, 장기간 동일 법인에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효율성과 경쟁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사업에 대한 수행 능력과 전문성, 공신력 등을 갖춘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과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

#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74
----------	-----

제출년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가족정책과

## 1. 제안이유

- 가.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2025. 12. 31.字) 에 따라, 강남구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함.
-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가족다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가족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가족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강남구 가족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가족센터 서비스 총괄 사업(가족사업안내(지침))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강남구 가족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	지하1층 ~ 지상4층 (2,693.66㎡)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등

- 위 치 도 및 현장사진





사진설명      강남구 가족센터 외부 전경



사진설명      강남구가족센터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b>지역여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포3동에 위치</li> <li>-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인접</li> <li>- 주변에 강남장애인복지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인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li> <li>- 인근에 대진공원, 마루공원, 일원에코파크, 양재천 등이 있어 외부활동 용이</li> </ul>
-------------	---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1. 1. ~ 2030. 12. 31.)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	출	원	가	①	인	건	비	기본급	858,803,240	44.7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2025년 가족센터 사업 안내						
								시간외근무수당	96,579,000	5.0							
								가족수당	18,600,000	1.0							
								정액급식비	34,320,000	1.8							
								명절수당	84,406,960	4.4							
								관리자수당	2,400,000	0.1							
								퇴직적립금	95,496,700	5.0							
								국민건강보험료	37,604,980	2.0							
								국민연금보험료	50,493,300	2.6							
								산재보험료	7,701,330	0.4							
								고용보험료	14,320,650	0.7							
								장기요양보험	4,869,840	0.3							
								기타후생경비	27,960,000	1.5							
								<b>소 계</b>	<b>1,333,556,000</b>	<b>69.5</b>							
								가	②	운		영	비	기관운영비	4,500,000	0.2	- 2025년 가족센터 사업 안내
														여비(국내)	2,400,000	0.1	
수용비 및 수수료	41,734,000	2.2															
공공요금	24,180,000	1.3															
제세공과금	4,148,000	0.2															
차량비	500,000	0.0															
<b>소 계</b>	<b>77,462,000</b>	<b>4.0</b>															
비	③	시	설	비	자산취득비	1,000,000	0.1	- 2025년 가족센터 사업 안내									
					시설장비유지비	7,840,000	0.4										
					<b>소 계</b>	<b>8,840,000</b>	<b>0.5</b>										
④ 사업비			500,715,000	26.0	- 2025년 가족센터 사업 안내												
<b>지출원가 합계(A=①+②+③+④)</b>			<b>1,920,573,000</b>	<b>100</b>													
수	입	원	가	⑤ 법인전입금	23,000,000	9.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3장 제13조(이용료 등)에 의거 실비차원의 프로그램 참가비 수입 발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⑥ 후원금	15,000,000	6.3											
				⑦ 프로그램 참가비	121,475,000	51.0											
				⑧ 사용료	78,638,570	33.0											
<b>수입원가 합계(B=⑤+⑥+⑦+⑧+⑨)</b>			<b>238,113,570</b>	<b>100</b>													
<b>위탁비용(A-B)</b>			<b>1,682,459,430</b>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심사 후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그 밖에 사업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5년 가족사업안내(지침)

2025년 가족센터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총괄

○ 가족사업

- 사업영역: 가족관계, 가족돌봄(온가족보듬),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다문화가족지원

- 사업영역: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교류 소통공간, 통번역, 결혼이민지역량강화 지원,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맞춤형직업훈련,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기초학습지원, 교육활동비지원, 진로설계지원, 이중언어교육지원

작성자 :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행정7급 임장재(☎ 02-3423-5813)